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태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002

발의연월일: 2023. 8. 24.

발 의 자:하태경·정진석·신원식

정희용 • 윤재갑 • 조은희

황보승희 • 이용호 • 백종헌

송석준 • 이주환 • 김영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,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운영하고 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의 영상정보는 행정안전부, 경찰, 소방 등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국민의 안녕을 위해 국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
특히 이태원 사고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를 즉각 활용할 수 없던 국가기관은 신속히 상황파악을 하지 못했음. 기초·광역단체의 CCTV가 국가 관계기관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인명사고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행정안전부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CCTV를 연계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74조제1항 후단

및 같은 조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·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·운영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74조(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제74조(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・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 구축 • 운영) ① -----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 · 긴급 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 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・ 운영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(「개인정보 보호법 |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통 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야 한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 <신 설> 책임기관 · 긴급구조기관 및 긴 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를 구축・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업무에 활용

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한다.